

農工地區施策의 推進過程과 發展方向에 關한 考察

A Study on the Policy of the Rural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金 杞 載

(內務部 地域經濟擔當官)

- - - < 目 次 > - - -

- I. 農漁村工業化 施策의 推進背景
- II. 農工地區開發의 推進實態
- III. 그간의 農工地區 施策의 推進過程
- IV. 農工地區 開發의 成果와 波及效果
- V. 農工地區 開發施策의 發展方向

I. 農漁村工業化 施策의 推進背景

우리經濟는 과거 다섯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크게 발전하여 선진국 경제수준으로의 跳躍까지도 바라보게 되었다. 經濟開發의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갖고있는 賦存資源이 부족하고 內需基盤도 취약하여 輸出을 中心으로 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에 依存하게 됨으로써 中央政府 주도하에 國家開發計劃을樹立하게 되었고, 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集中的인 투자를 하는 발전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결과 企業活動에 필요한 經濟商工行政機能, 金融과 情報 등이 서울등 대도시지역과 수도권지역에 밀집하게 됨으로서 首都圈과 地方間에, 도시와 농촌간에 소득과 생활환경에 있어隔差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政府에서는 農漁村地域에 工業部門을 도입하여 國民經濟의

基盤을 強化하고 서울등 대도시에서의 過密問題를 解消하며 生產力 증대가 限界에 다다른 農業部門을 보완하고, 인력고용효과와 소득창출효과를 높이면서 農漁村地域經濟의 活性화를 도모하여 國土의 均衡開發을 기하여야 한다는데에 認識을 같이하게 되었다.

1. 農外所得의 增大

農漁村地域에 工業部門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보면 한결 명확해진다¹⁾. 아래 <표1>에서 보듯이 1983년도에 우리는 農家所得構造上 농업소득이 65%나 되는데 비하여 일본이나 대만은 1980년도에 각각 20%와 26.4%에 불과하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의 農外所得比率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示唆點은 비단 구성비가 높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들의 大部分이 勞賃所得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촌지역에 工業化가 크게 進展이 되면서 農村人力의 工場就業機會가 擴大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안고있는 農村問題도 根本的으로는 낫은

1) 金鍾基, 「農外所得增大方案」, 地方行政 第35卷, 第389號, 大韓地方行政共濟會, 1986. 3

〈표-1〉 韓國·日本 및 臺灣의 農家所得 構造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合計	兼業所得	勞貨所得	財產·기타
韓國	1965	100.0	79.2	20.8	3.5	8.9	8.4
	1983	100.0	65.0	35.0	3.6	13.1	18.3
日本	1962	100.0	51.4	48.6	9.4	25.9	13.3
	1980	100.0	20.0	80.0	5.7	69.1	5.2
臺灣	1966	100.0	66.0	34.0	2.8	20.1	11.1
	1980	100.0	26.4	73.6	6.2	52.2	15.2

資料：金鍾基，上揭論文

所得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에所得基盤만 확보되면 農漁村定住基盤이 조성되게 되고, 그러므로 대도시로의 人口流出도 균원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농어촌은 빈약한 耕地面積과 낮은 農業生產性으로 인하여 所得增大가 限界에 다다르고 있다.

따라서 農漁村工業化는 비록 단기간내에 現實化하기가 어렵고, 또 초기단계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國土開發上 人口의 적정한 分散配置, 地域間 均衡開發과 國民經濟의 效率性增大 次元에서 時急한 課題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2. 새마을工場施策의 反省과 새로운 農漁村工業化 戰略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어촌에 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1973년부터 1983년까지 추진한 새마을工場建設이 代表的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工場은 농어촌지역에서 생산되는 原料의 이용과 농어촌의 遊休勞動力を 활용하여 所得隔差를 줄이고 地域社會를 發展시키고자 人口20万이상의 市 및 기존의 公업단지와 산업기지 개발구역 등을 除外한 地域

에 1個 邑面當 1個工場建設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1973년 165개가 지정된 이후 1983년 까지 1,300여개가 지정되었으나 이 중 경영이 부실한 682개 업체가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529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는 바, 지정된 공장중 50% 정도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고 취소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농촌지역에 工業地域與件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과 입주업체의 經營能力不足, 정부의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支援未備등이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요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²⁾.

첫째, 농촌공업입지의 構造的인 問題点으로서 工業化의 下部構造에 대한 支援이 缺如되었다는 점이다. 도로망과 수송시설이 미비하였을뿐만 아니라 농촌공업화에 대한 정부의 確固한 支援과 方針體系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金融機關및 技術·經營情報에 대한 接近性이 매우 낮았다.

둘째, 농민이나 지역주민이 기업경영자로 대거 참여함으로서 專門經營ability이 不足하여 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다.

세째, 1個邑面 1個工場 造成의 원칙에 의거

2) 韓國地方行政研究院,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農工地區開發方向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書 第24卷, 1988. 2

邑面單位로 각기 分散立地를 함으로서 교통통신, 상하수도, 동력인입 등 간접자본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로 生產費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속련도가 낮아 경쟁력마저도 불리한 입장이었다.

네째, 새마을工場 指定時 事業性檢討를 하지 않은 채 入住優先政策을 추진함으로서 제품판로상 많은 애로에 직면하였고, 業種에서도 경기변동이나 국민의 의식구조와 밀접하게 관련성을 갖고있는 農產物 加工工場이나 기업의 안전성이 불확실한 新規創業企業이 많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農漁村工業開發戰略은 새마을工場에서 教訓을 얻어 전기통신, 도로망, 상하수도 등 工業立地與件이 조성되어 있는 地方中小都市와 農村의 中心地에 소규모로 團地를造成하여 工場을 集團化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게 되었으며 農工地區는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여 추진하게 되었는 바, 새로운 農村工業化施策의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다³⁾.

첫째, 農漁村工業化施策의 推進은 우리경제의 第2의 跳躍을 위한 國土綜合開發計劃의 일환으로서의 추진이라는 점이다. 農漁村工業化施策은 단순한 농외소득개발이 아닌 地域均衡開發, 人口의 分散과 地方定着, 工業再配置등의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자기지역의 發展可能性과 開發潛在力を 확충하여 地域經濟를 活性화시키고자 하는 綜合開發計劃이다.

둘째, 集團立地中心의 農村工業方式을 도입하였다. 農工地區를 造成하여 공장을 集團化함으로서 업체별로 개별자유입지에 따른 농지훼손과 환경오염문제를 방지하고 도로, 용수,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에 필요한 費用을 節減하며,

금융, 기술, 경영관리기법등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째, 工業導入與件이 유리한 農漁村定住生活圈의 중심지 위주로 農工地區를 造成함으로서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交通與件이 비교적 용이하고 人力確保가 용이한 중소도시나 邑等 정주생활권 인근에 집단입지시키는 것이 업체유치 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되었다. 工場이 산발적으로 입지하게 되면 副業的으로 영농을 하는 兼業農家가 늘어나게 되어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구조개선사업 마저도 저해할 수가 있으나 定住圈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근 농촌지역의 인구가 定住圈 中心으로 이동하여 在村脫農을 유도할 수 있고, 부업적인 개념의 소극적 농촌공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농촌공업화를 추진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네째, 農工地區는 農漁村住民이 취업할 수 있어야 하며 入住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企業活動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를 위하여 工場入住節次를 간소화하고 工團造成費와 施設 및 運營資金支援, 稅制減免을 하는등의 法的·制度的인 支援外에도 기술인력의 확보와 공급, 판로확대, 자금지원 일선 등 行政的인 支援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지난 60~70년대의 農村工業概念과 현재의 農工地區 施策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過去의 農村工業(소극적개념)

- 규모 : 주로 소규모기업
- 입지 : 개별입지
- 업종 : 농어촌시장 지향성 또는 농수산업 관련
업종
- 입주업체 : 도지사가 일정기준에 의거 선정

3) 經濟企劃院, 農漁村工業化推進戰略, (業務指針)
1984. 11

- 주체 : 경영경험이 없는 현지주민 중심
- 지원 : 부분지원 (세제, 금융)
- 정부 관계기관 : 상공부, 시도
- 외부지원기구 : 없음.

現在의 育成方案 (적극적 개념)

- 규모 : 규모 제한 없음
- 입지 : 집단 입지 (사회간접시설 정부지원)
- 업종 : 기존부존자원 활용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하되 기본적으로는 업종에 대한 제한 없음 (단, 공해업종 제외)
- 입주업체 선정 : 사업성과 환경오염을 철저히 검토하여 선정
- 주체 : 경영능력이 있는 기업인 중심
- 지원 : 종합적지원 (공단조성, 금융, 세제, 기술, 경영 등)
- 정부 관계기관 : 경제기획원, 내무부, 상공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환경청, 시도
- 외부지원기구 : 중소기업진흥공단

II. 農工地區 開發의 推進實態

지난 84년부터 지정개발된 農工地區는 一般指定地區와 特別指定地區를 합하여 88년 6월말 현재 70개市郡 102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고용계획 인원은 166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道別,

年度別 現況을 보면 충북이 23개소, 충남이 21개소, 경북이 17개소 경남이 13개소의 順으로 되어있고, 交通條件이 유리한 충남북지역에 그 相對的 比重이 높게 나타나 있으나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西南海岸地域으로 立地需要가 점차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農工地區 開發의 道別, 年度別 現況은 〈표2〉 및 〈표3〉과 같다. 造成現況은 총 102개의 지구중 공사완료는 38개 지구이고, 36개지구가 부지조성중, 28개지구가 부지조성준비중에 있다. 現在 入住企業 1,034개중 13.9%에 불과한 144개업체가 가동중이라는 것은 農工地區가 아직 初期段階에 있음을 나타내며 가동공장의 數는 年次의으로 증가될 것이다.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企業規模別로는 中小企業이 96.2%를 차지하며 大企業은 3.8%에 不過하고 〈표4〉, 入住形態는 大都市에서의 移轉이 49.2%, 大企業의 分工場이 17.1%, 創業이 33.7%를 나타내고 있다. 移轉業體를 보면 수도권으로부터는 32.1%, 대도시에서는 13.6%, 기타 3.5%로서 首都圈으로부터의 移轉比重이 높다. 따라서 충남북지역으로의 入住需要 殺到는 이와 관계가 깊다고 하겠다. 生產品目別로는 기계금속이 27.8%, 전기전자 20.9%, 봉제섬유가 12.1%, 화공 10.5%, 식품 6.9% 등으로서 地域賦存資源 活用側面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하겠다.

〈표-2〉 年度別 農工地區 指定現況

(88. 6. 25 현재)

구 分	지 구 수			연 면적 (천 평)	입 주 공 장 (개)	고 용 계 획 (천 명)	시 군 수 (개)
	계	일반지정	특별지정				
계	102	52	50	4,045	1,304	166	70
'84	7	7	-	182	78	11	7
'86	24	16	8	104	217	34	21
'87	46	19	27	2,145	452	85	27
'88	25	10	15	1,104	287	36	15

〈표-3〉 地域別 指定現況

지구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일반농어촌	102	1	7	23	21	10	10	17	13
· 낙후농어촌	57	1	5	19	19	—	3	5	5
연면적(천평)	4,045	34	294	761	771	435	644	692	377

〈표-4〉 開發 및 入住企業 現況

	계	개 발 현 황			기 업 규 모 별	
		조성완료	조성중	준비	대기업	중소기업
지구수	102	38	36	28		
입주업체	1,034	339	398	290	39 (3.8)	995 (96.2)
· 가동중	144	144	—	—		
· 설비중	174	117	57			

農工地區 造成事業이 추진된 기간은 4年余에 이르고 있으나, 위에서 보듯이 공장 가동측면에서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地域社會와 地域經濟에 미친 파급효과를 綜合的으로 評價하기에는 다소 時機尙早라고 볼 수 있다⁴⁾. 다만 대부분의 農工團地는 位置選定이 좋고 團地造成工事도 정상 추진중이며 造成이 완료된 團地는 가동이 당초의 기대보다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어 農工地區는 地域住民과 中小企業들로부터 환영 속에 農外所得增大와 地域開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評價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주부등의 유휴노동인력 활용과 청소년의 農村定住誘導, 入住企業의 농가위탁 하청생산에 의한 農家副業擴大, 入住企業의 原料로 사용하기 위한 農作物契約栽培, 농공지구와 지역주민과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유대 관계 밀착⁵⁾ 등은 현재까지 나타난 커다란 成果

라고 볼 수 있다.

本研究는 앞으로 93년까지 350個所의 農工地區造成을 고려할 때, 이들 農工地區가 成功的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현재 까지의 效果面을 고찰하는 것보다는 政策의 推進過程面을 살펴 봄으로서 農工地區事業을 직접 추진하는 地方自治團體가 계획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意義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本研究는 1983年 12月 31日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을 제정, 공포한 이래 현재까지 어떻게 農工地區 施策을 추진하여 왔는가를 고찰함으로서 政策分析的 次元에서 앞으로의 農工地區施策을 미리 照明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第1次의 研究目的을 두고자 한다.

III. 그간의 農工地區 施策의 推進過程

1. 農工地區開發 關聯施策의 決定과 最初指定

정부에서는 1983년 12월 31일 농어촌소득원개

4) 經濟研究院, 農漁村工業開發效果의 調查研究, 卷 1, 1988. 3

5) 內務部에서 現地 確認 實查한 바에 의하면 地域別로 이러한 實態가 많이 發見되고 있음.

발촉진법이 공포되자 바로 84年度 農工地區 候補地 調查에 착수하는 한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을 1984年 5월 14일 제정 공포하면서 第2條에서 農工地區를造成할 수 있는 農漁村地域으로서 경기도를 제외한 全 郡地域과 속초, 제천, 남원, 정주, 금성, 김천, 영주, 충무, 삼천포시등을例示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관계부처차관들로 구성된 中央 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의 審議를 거쳐告示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4년 9월 6일에는 國務會議의 심의를 거쳐「農漁村所得源開發基本方針」을 확정하였는바 관련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工地區는 全 郡地域및 人口 10万以下の市地域을 대상으로 1~2만평의 工業團地로造成하고 농공지구 입주절차는 시장, 군수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事業性檢討를 받아 적합한 기업만을入住承認함으로서 入住業體의 不實化를 방지한다.

둘째, 綜合的으로 入住業體를 支援한다. 농공지구의 진입로, 전력, 통신등 公共施設을 정부가 지원하고 市長, 郡守의 입주승인으로 공장설치의 認許可節次를 간소화하며, 투자준비금을 損費로 인정하고 특별감가상각도 인정하는 동시에 등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세째, 農漁村 工業發展을 지원하기 위하여 中小企業振興工團에 「농어촌공업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여 기술및 경영지도와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農漁村工業支援資金」을 마련하여 시설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네째,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농공지구 지정시 환경문제를 환경청이 사전검토하여 公害業種은 入住를 제한한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 道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공사와 중소

기업진흥공단 주관하에妥當性調查를 실시한 후 1984년 12월 17일 각 道別로 1개소씩 7개지구를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農工地區로 지정하고 「事業推進指針」을 작성하였다. 이때 작성된 事業推進指針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地區選定 基本方向

○ 대상지역

- 전 郡지역(경기제외)및 인구 10만이하의 市지역

○ 선정방법

- 각 道別로 후보지 접수후 관계부처 次官으로 구성된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관계중앙부처 실무자로 현지답사)

○ 면적

- 지역의 인구, 산업경제, 공업개발의 잠재력, 용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1~3만평 규모에서 적정개발

○ 선정기준

- 國土綜合開發計劃, 道綜合開發計劃등의 농어촌공업 육성지역과 연결

- 道路, 通信與件이 양호하고 入住희망업체가 많고 노동력공급이 용이하며 입주가능성이 큰 지역으로서 농어촌생활권의 중심지를 선정

2) 農工地區豫備調查

- 각 道에서 추천한 전 지구를 농업진흥공사 조사요원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개략 사업비를 추산

- 조사사항: 토목 및 지질조사, 용지매수 및 보상물, 전기·통신시설, 사업시행과 관련된 법령사항등

3) 관계부처 현지 확인실사 및 검토

- 내무부,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상공부,

동자부, 건설부, 산림청, 환경청, 농진공, 중진공, 연구기관으로 구성하되 소관사항별로 현지에서 확인

4) 農工地區 審議選定

- 實務作業班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

5) 用途地域 變更告示

- 당해 지역을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구'로 변경

- 국토이용계획 일부변경결정조서등 지정 또는 변경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첨부

6) 入住業體 誘致公告 및 案內容口 設置運營

- 해당市郡이 용도변경고시와 동시에 입주 유치공고(신문광고등)하고 지방상공인을 대상으로 농공지구 설명회및 안내창구 설치

7) 農工地區 豫算編成 執行

- 農振工의 기본조사에 의해 사업비를 추정하되 예산편성은 농수산부의 예산배정에 따라 시군예산(농공지구 특별회계)으로 편성

* 農공지구 조성사업비 지원내용

(%)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비 고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토지매입비	100%	—	70	—	30	대체농지 조성비포함
지구조성비	100	30	—	—	—	
전입도로	100	70	—	30	70	
전력통신	100	100	—	—	—	
설계비	100	100	—	—	—	

8) 入住業體 檢討 및 入住承認

- 시장, 군수가 입주를 승인하되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환경청에서 검토하고,事業性에 관하여는 中小企業振興團 (공산품제조업체)과 農漁村開發公社(농산물가공 및 식품제조업체)가 사전검토

9) 入住業體 選定 및 分讓

○ 分양조건

- 분양가격은 실제 地區造成에 소요된 비용(토지매입가+지구조성비)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시장, 군수가 결정

- 분양시 분할상환조건은 최장 3年거치 5年 분할상환(年利10%) 범위내에서 결정

○ 환매권조항 명시

- 不動產投機방지를 위하여 분양후 5년 이내에 전매시 또는 입주승인 취소시 환매하되, 상환기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8年이내 전매시 환매

10) 農工地區 調查設計

- 調査는 農業振興公社가 맡되 예비조사와 기본조사로 나누어 예비조사는 후보지 전체에 대하여, 기본조사는 農工地區 선정지역만 실시

- 豫備調查는 基本調查의 필요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개략조사 실시

- 基本調查는 공사기간, 공사비, 공장시설의 시공계획성등 필요한 내용을 조사

- 實施設計는 立地條件, 入住業體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

11) 農工地區 造成 및 入住

- 市長, 郡守 책임하에 조성하되 시공은 지방건설업체가 담당하고 農振公이 감리

- 入住希望業體가 지구면적의 50%를 넘을때 공사발주

- 買收補償費는 國家公認監定機關이 算出한 價格에 의하여 확정하고 가능한한 전량 매수나 보상 또는 일괄보상함을 원칙으로 함.

- 市長, 郡守는 예산범위내에서 事業計劃書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

(2) 事後管理(年中)

— 분양완료 이전에는 入住業體에 대한 事後管理를 포함하여 市長, 郡守의 책임이며 분양완료후에는 입주업체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 농공지구관리단체를 구성하여 관리를 위탁

2. 農工地區開發 關聯施策의 修正補完

1) 1985年

〈'85 1次 中央委員會 開催〉—85. 2. 21

① 入住需要 確保

85年度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가장 큰 課題는 84年度에 最初로 指定된 7個農工地區의 早速한 入住需要確保와 부지조성및 85年度 指定對象이 될 후보지를 選定하는 것이었다.

1985年 2月 21日 開催된 中央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 (이하 中央委員會라 함)는 84年度에 指定된 7個農工地區의 推進現況을 報告받고 '85年度 農工地區 選定을 위한 推進日程을 確認하는 한편, 農漁村의 工業立地 全般에 對한 需要調查를 實施하고 農工地區開發計劃等 農漁村 工業의 長期政策方向을 定立하는 「農漁村工業促進長期計劃」을 樹立키로 하였다.

② 入住誘致 및 弘報強化

農工地區의 入住誘致를 促進하고 農工地區開發施策을 널리 알리기 위해 '85年 4月 12日 부터 4月 25日까지 서울에서 5회, 地方에서 5回씩 農工地區 入住誘致를 위한 事業說明會를 開催하고 5月 31日에는 7個道 商工運輸局長 會議를 開催하여 事業指針을 說明하였다.

入住誘致事業說明會는 商工會議所와 中小企業中央會의 會員社를 對象으로 各種支援惠澤等을 中心으로 進行되었으며, 講師로는 關係部處課長과 中小企業振興工團, 各道의 商工運輸局長, 農工地區地域 郡守이 擔當하고 商工會議所等 經濟團體에서 發刊하는 各種 刊行物에 農工地區를 소개하고 홍보토록 하였다.

그리고, 地方의 時代에 對備한 道와 市郡等 地方自治團體의 事業이라는 것을 強調하고 市長, 郡守, 道知事은 入住業體를 積極誘致하여 地域內의 農工地區가 早期에 活性화 될 수 있도록 積極的인 役割을 遂行하도록 認識의 轉換을 促求하였다.

뿐만아니라 1985年 5月 6日에는 内務部等 關係部處의 關係官이 모여 道의 輸出工業課로 주무부서를 變更하기로 하였다. 農工地區造成및 분양업무를 工業化와 關聯이 적은 道의 農林局 農政課에서 擔當推進하고 있어 事業이 不振하므로 이를 打開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輸出工業課에서 業務를 推進할 境遇 工業團地等의 造成經驗을 活用하고 關聯施策이나 經濟團體等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道單位에서 責任있는 業務推進이 可能하다고 判斷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9月 10日에는 内務部와 經濟企劃院, 서울市等의 關係者들이 모여 大都市에서 工場들을 移轉시켜 農工團地로 入住를 誘致코자 「大都市移轉對象企業實態調查」를 위한 方案을 協議하고, 對象企業들을 積極 農工地區에 誘致시키기로 하였다.

③ 農工地區造成 및 管理條例 制定

農工地區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고자 造成과 管理에 對한 事項을 中心으로 道條例를 制定키로 하고 關係部處에서 參與하여 조례안을 검토한 후 3月 20日 경제기획원에서 道에 준칙안을 通報하였으며 内務部에서는 各道의 여건을 綜合하여 6月 13日 農工地區造成및 管理條例準則를 보완하여 공포, 施行토록 承認하여 시달하였다.

따라서 道와 市·郡單位에서 施策推進을 위한 基本的인 틀을 完備하게 되었다.

<'85 2次 中央委員會 開催> - 85.10.17

1985年 10月17日에는 2次로 中央委員會를 開催하고 그 동안 推進實態를 점검한 결과 農工地區開發事業을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為하여는 入住需要를 確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課題라는 데에 認識을 같이 하고 이를 具體的으로 確保하기 위한 方案을 적극적으로 論議하였다.

① 農工地區豫定地區制導入

84年度에 指定된 7個 農工地區 및 '85年度事業推進指針上 農工地區指定制度는 各道에서 후보지를 추천하면 中央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後當該 市長·郡守가 農工地區로 確定하여 指定하는 節次였다.

그러나 入住需要가 正確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農工地區로 確定하여 指定할 경우 入住需要不振으로 長期間 資金의 유휴화 및 政府施策의 신뢰성저하우려, 道와 郡에서 農工地區指定을 받는데만 急急하고 지정후에는 入住誘致努力이 未洽하는 등 問題點이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農工地區로서의 적지라고 判斷되는 地域은 入住需要파악을 위하여 農工地區로서 指定하기 前에 農工地區豫定地區로서 指定하고, 農工地區豫定地區中 地區造成面積對比 50%以上 입주수요가 확보될 때 地區指定과 同時に 地區造成作業에 착수토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예정지구가 계속 本地區指定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政府施策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예정지구로 선정된 후 2년이내에 本地區指定을 받지 못하면豫定地區가 自動 해제되고 當該 市·郡은 向後 2年間 農工地區審查對象에서 除外시키도록 하여 市·郡에서 入住誘致努力을 強化토록 하였다.

② 入住企業에 對한 環境要因 檢討方法 改善

環境保全法에 依하면 個別中小規模工場의 排出施設設置許可業務(4,5種)는 市道知事에게 委任되어 있었으나 農工地區는 환경오염을 철저히 防止하기 위하여 規模에 관계없이 모든 入住企業에 對한 環境要因 檢討를 環境廳이 直接遂行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運營結果 民願人이 環境問題를 說明하기 위하여 地方에서 上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고 아울러 모든 檢토를 환경청이 하게 됨에 따라 環境廳의 業務負擔이 과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배출시설 設置許可權(4,5種)이 委任된 對象은 各道에서 檢토토록 一元化 하였다.

③ 農工地區入住誘致活動強化

農工地區에 入住토록 중점적으로 誘致活動을 強化할 對象企業으로 創業中小企業, 工場集團化 및 施設共同化事業等의 中小企業協同化事業, 大企業의 系列企業과 分工場, 大都市所在 非都市型業種中 製造工場 및 工團廢止로 因한 移轉工場, 農畜水產物加工工場等을 例示하고, 그 方法으로는 中小企業創業 및 協同化事業申請時 入住誘導, 大都市所在 移轉對象企業의 誘致等 行政指導와 入住案內資料의 우송, 방문권유등 안내활동을活性화하기로 하였다.

④ 農工地區施策의 積極弘報

主要都市에 對한 說明會와 商工會議所等 經濟團體에 對한 說明會外에도 農工地區 案內冊子 및 農村工業의 成功事例에 對한 슬라이드와 弘報冊子를 製作·配布하고 신문광고, 各種 經濟團體의 刊行物等 弘報매체를 최대한 活用, 弘報토록 하였다.

⑤ 關係機關의 職員에 對한 教育強化

農工地區關聯 中央과 地方廳의 公務員, 中振工, 農開公, 및 關聯 經濟團體의 임직원등을 對象으

로 農工地區 入住誘致方案 및 入住企業에 對한 各種支援惠澤을 소개하는 教育을 擴大키로 하였는바, 이는 農工地區施策의 成功的인 推進은 關聯職員들이 얼마나 內容을 잘알고 적극성을 보여 弘報活動을 하느냐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10月31日 '85年度에 豫定 地區로 選定된 21個地區의 市長, 郡守와 7個道의 商工運輸局長, 內務部, 農水產部, 商工部의 課長들을 召集하여 農村工業化의 必要性認識, 農村工業導入計劃의 推進日程과 入住誘致等 農村工業化를 為한 地方의 役割과 農工地區造成節次에 對한 教育을 實시하였다.

또한, 道와 市郡에서 直接實務를 擔當하는 道의 係長과 擔當者, 市郡의 課·係長과 擔當者等 總 100名을 11月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間 中小企業振興工團研修院에 入所시켜 集中的인 教育을 實施하였다.

敎育內容은 農工地區施策의 概要, 入住業體의 事業計劃承認書作成 指導要領, 企業誘致요령, 事例發表, 工團및 協同化事業場見學등을 包括하였으며, 야간에는 農工地區施策에 對한 自由討議를 實施하여 農村問題에 대한 認識을 正確히 하도록 하였다.

〈農漁村綜合對策樹立을 為한 基本方向 設定〉

1985年은 政府의 政策擔當者들에게 우리 農村이 커다란 問題意識을 던져준 해라고 하겠다. '83年度에 909천원 수준이었던 手續아지 가격이 '85년 9月에는 394천원으로 下落하는등 소값파동이 發生함으로써 소사육農家가 全體農家の 質반이 상을 차지하는 實情이어서 그 피해는 廣範圍하게 산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보리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生產減少로 보리 所得도 크게 줄게 되었다.

그러나 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른 家計費와 教育費支出의 增加等 農家の 費用은 急激히 增加하고 있었고 이에 補償될만한 農產物 價格이나 向後의 農業所得增加展望은 별로 밝지가 못한 實情이었다.

뿐만아니라 都農間의 生活環境隔差, TV等의 普及이 擴大됨에 따라 都市 中上流家庭과 비교한 소외감, 저농산물가격정책등에 의한 農民의 피해의식이 크게 번져가고 있었다.

따라서, 農村經濟問題가 단순한 農業만의 問題가 아니라 여러가지 經濟, 社會的要因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어 農漁村經濟의 活性화는 全體經濟運用의 側面에서도 조속히 推進될 필요가 있어 1985年 10月 17日 關係部處次官들이 모여 農漁村綜合對策樹立을 위한 基本方向을 設定하게 되었다⁶⁾.

農漁村綜合對策의 主要作業課題에는 農畜產物價格安定 및 流通構造의 改善, 農畜產物生產體系改編으로 農業所得源의 擴充, 農地所有 및 利用에 관한 制度의 整備, 農業構造改善을 위한 農業投資의 확대, 農漁村生活環境改善과 福祉向上, 農政弘報및 農民의식개혁敎育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무엇 보다도 第1順位의 課題는 農村工業化에 依한 農村所得增大라고 할 수 있었다.

農村經濟가 安定되어 있는 各國의 경우를 보더라도 높은 農外所得에 의해서 農村經濟가 뒷받침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록 단기적으로는 큰 成果를 期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長期의 으로 農村工業化를 꾸준히 推進하는 것만이 農家所得增大와 國土均衡發展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6) 經濟企劃院, 農漁村綜合對策樹立指針(內部資料), 1985. 10

細部作業課題로는 이미 '84年度부터 推進하고 있는 農工地區施策과 關聯하여서 이를 擴大強化하는 側面에서 그 内容을 補完하기로 하고, 國土綜合開發次元에서 農村工業配置 計劃의 再定立, 農工地區및 農村入住工場에 對한 稅制, 金融, 機能人力等의 支援擴大, 市道의 商工行政機能強化, 首都圈 人口集中抑制施策의 強力實施등 農漁村工業化를 為한 與件造成課題들로 選定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過程에서 1985年度에는 農工地區후보지를 選定하여 豫定地區指定을 위한 作業만을 進行시킴으로써 本地區指定은 하나도 되지 않았으나 道나 市郡에서는 '84年度에 指定된 農工地區와 '85年度에 추천하여 豫定地區로 選定된 地域에 對한 弘報및 入住誘致活動, 施策에 對한 正確한 이해등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었다.

2) 1986年

86年度는 農工地區施策이 커다란 도약을 기하고 農漁村工業化施策이 농촌개발의 핵심과제로 점차 그 重要性이 커지게 되었다.

2월 27일에는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논의하여 왔던 농어촌발전 방안을 대통령께 「농어촌종합대책」으로 보고· 확정하고, 4월23일 개최된 中央委員會에서는 農工地區 指定對象지역 범위의 확대, 特別 農工地區 指定制度의 도입, 農工地區부지造成에 대한 國庫支援制度의改善, 農工地區弘報擴大 方案등을 중심으로 政策改善方案을 도출하였다.

〈農漁村綜合對策의 確定〉—86. 2. 27

2000년까지 都市수준으로 農漁村의 生活與件을 改善하기 위하여樹立된 農漁村綜合對策은 크게 農漁村工業導入등 農外所得源의 개발촉진, 農水產物需給安定對策등을 포함한 農水產所得源

의 擴充, 農漁村의 社會間接資本의 擴充과 農漁村生活與件 개선등 3個課題로 크게 나눠져 있으며, 이러한 政策課題를 올바로 추진하기 위한 補完課題로서 農漁村開發 特別基金의 新設, 地方商工行政機能의 強化와 農漁村關聯機關(農水畜協, 農業振興公社, 農漁村開發公社, 山林廳)의 機能 再定立, 農漁村負債輕減, 農漁村의 過消費抑制등을 推進키로 하였다. 그러나 가장 重要的 政策課題는 農工地區施策으로 特정지위지는 農漁村工業化와 內務部 및 市道에 地域經濟局의 新設이라고 할 수 있었다. 主要內容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農漁村地域 工場에 대한 稅制 등 支援強化
中小企業創業支援法 制定으로 工場建設節次를 簡素화하고 農漁村地域 入住企業에 대하여 稅制支援을 擴大하기로 하였다. 農漁村에 創業하는 中小企業은 法人稅와 所得稅를 3年間 免除, 2年間 50% 減免하고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며 農工地區에 入住하는 業體는 法人稅와 所得稅를 3年間 免除, 2年間 50% 減免을 追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地方에 移住하는 大都市工場에 대한 讓渡所得稅 減免對象地域을 기존의 首都圈, 釜山, 大邱에서 大田, 光州를 追加하기로 하였으며 道 農民教育院의 職業訓練機能을 強化하여 農村工業化를 뒷받침 하기로 하였다.

② 農工地區事業의 本格的 推進

91년까지 100個 農工地區를 指定키로 하고 對象地域을 中小都市에까지 擴大하였으며 地方工業團地 建設은 農工地區로 一元化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여 工業誘致地域과 工業開發獎勵地區의 指定을 일단 保留하고 首都圈의 工團建設은 農工地區와의 聯關性을 檢討하여 推進하며 이를

위해 「產業立地審議會」를 設置 運營키로 하였다.

③ 代替農地 造成費 免除

軍事 및 公共用地에 한하여 50%만 減免하였던 代替農地 造成費의 減免對象을 擴大하여 農工地區, 農漁村觀光休養地, 魚類畜養 等 所得源 開發事業에 대하여는 向後 3年間 免除하기로 하였다.

④ 農漁村所得源의 開發 促進

道別로 專擔要員을 配置하는 「農外所得源 誘致센타」를 서울에 設置 · 運營키로 하고 工場誘致, 副業斡旋, 觀光案內, 民泊斡旋 活動을 展開하기로 하였다. (日本의 例: 各 縣이 東京, 大阪 等地에 工場 및 觀光客 誘致를 위한 出張所를 設置 · 運營)

그리고 地方 民俗酒 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酒類 製造業 免許基準의 緩和 및 節次를 簡素化하기로 하였으며 聚落 隣近의 保全林地는 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準保全林地로 轉換키로 하였다.

⑤ 農漁村地域開發 特別基金의 新設

農工地區등 農漁村綜合對策을 實效性있게 推進해 나가는데 必要한 中長期低利資金을 供給(年利 5%, 期間 3~20年)하기 위하여 88년까지 5,000億원의 基金을 造成하여 農工地區, 農地購入資金, 農漁村 觀光地開發, 加工 및 貯藏施設, 農漁村 所得源道路, 漁船代替 및 水產開發, 保健 · 醫療基盤 擴充, 農水產 技術開發, 其他農業構造改善 사업 등에 응자 하기로 하였다.

(財 源)	86	87	88	計
-------	----	----	----	---

○ 財政資金 및 輸入賦課金	200	1,500	1,500	3,200
----------------	-----	-------	-------	-------

○ 金 融 資 金	600	600	600	1,800
-----------	-----	-----	-----	-------

計 (億 원)	800	2,100	2,100	5,000
---------	-----	-------	-------	-------

⑥ 農漁村對策의 效率的 推進을 위한 制度改善

(a) 地方政府의 機能과 組織 再整備

地方政府의 經濟 · 商工 行政組織을 強化하여 中央의 權限移讓을 촉진하기 위하여 地方政府의 機能 및 組織 改編을 위한 協議會를 副總理, 內務部, 農水產部, 商工部, 保社部, 總務處長官으로 구성 · 운영한다.

(b) 農漁村 關聯機關의 機能 再定立

農水產物의 流通改善과 農漁村綜合開發 機能을 強化하기 위하여 農村經濟研究院의 農漁村綜合開發 研究活動을 強化하며, 農 · 水 · 畜協은 機能別로 本部長 制度를 導入하여 經濟事業機能을 補強하고 單協의 自律性을 提高하여 中央會가 수행하고 있는 一部 機能을 移讓키로 하였다.

그리고 農業振興公社는 農漁村振興公社로 名稱을 變更하여 農工地區 造成事業 等 農漁村綜合開發을 擔當하며, 農漁村開發公社는 現機能에 符合되는 名稱인 農水產物流通公社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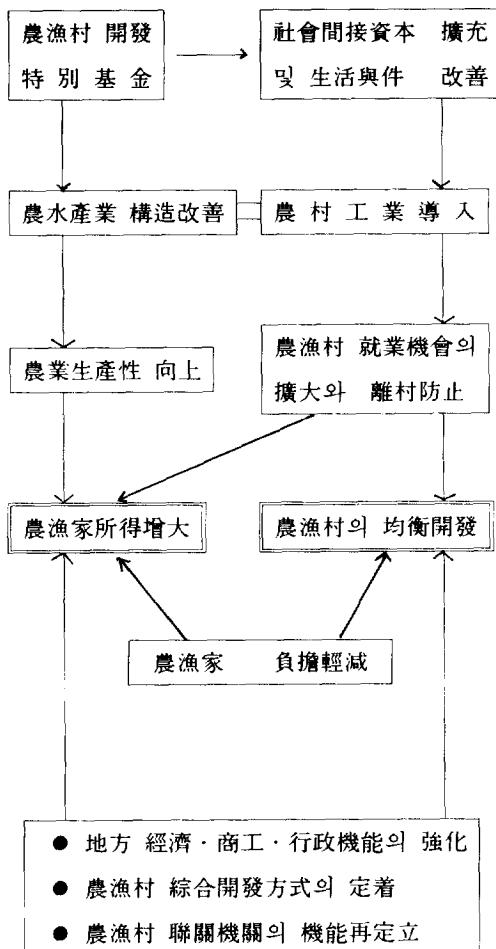
農漁村綜合對策이 포함하고 있는 各 部門別對策의 相互關係와 效果를 간단히 圖式化한 것 이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 있다.

<'86 1次 中央委員會 開催> - 86. 4. 23

① 農工地區 指定對象地域 範圍擴大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令上 「農漁村地域」의 범위는 全 郡地域과 人口 10万이하의 市로 制限되어 있어 工業立地與件과 環境이 보다 유리한 地方中小都市가 農工地區를 造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86年 1月1日字로 行政區域이 變更되어 11個邑面이 市로 승격함에 따라 農漁村地域의 範圍調整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農漁村 工業化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農漁村地域의 範圍를 人口 20万이하의 地方中小都市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비록 人口



가 20万이하라 하더라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全市와 대규모 工業團地가 있는 市, 경주시와 서귀포시는 그 特性上 農漁村地域이라고 볼 수가 없어 除外하기로 하였다.

② 特別農工地區 指定制度의 導入과 開發延面積制限

企業이 農工地區 이외의 農漁村地域에 工場建設을 원할 경우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거, 創業企業은 支援이 있으나 移轉 中小企業이나 大企業은 除外되어 있고, 創業中小企業이라 하더

라도 우량농경지 체손방지등 國土의 效率의 利用을 위해서는 가급적 集團立地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었다. 따라서 企業이 願하는 特定地域을 農工地區로 指定하는 指定方式의 보완이 農村工業活性化 次元에서 바람직스럽게 인정됨에 따라 農工地區豫定地區외에 特別地區를 指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特別指定農工地區는 3個以上의 企業이 먼저共同으로 入住하기로 約定한 후 15,000坪 以上的 공장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指定하기로 하고 指定 절차는 一般農工地區와 같되 다만 入住需要가 確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豫定地區選定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本地區 指定을 하는 方式을 채택하였다.

特別農工地區에 대한 支援은 一般農工地區와 同一하게 國費支援을 하되 다만 부지매수 및 시공비에 대한 보조는 응자로 轉換하여 支援하고, 大企業이 포함된 경우는 土地利用規制완화, 租稅減免, 代替農地造成費 면제혜택만 부여하고 국비보조나 응자지원은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特別農工地區를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一般農工地區와 같이 8年以内 전매시 당해 市郡이 환매권을 行使하고 필요시에는 特定地域으로 告示하여 企業別 工場立地需要에 대해서도 立地元單位를 적용키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農工地區集中을 防止하여 地域間 均衡開發을 期하고자 市는 20万坪, 郡은 10万坪으로 延面積을 제한하고,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하여 指定된 기존의 地方工業開發獎勵地區나 工業配置法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誘置地域중 入住實績이 부진한 地域에 대하여는 필요시 農工地區로 指定하여 造成함으로써 入住를 促進토록 하였다.

③ 農工地區 敷地造成에 대한 國庫支援制度의 改善

農工地區에 대한 國庫支援이 用途別로 너무 細分化되어 있어 設計變更등의 與件 變化時 財源間에 상호융통이 곤란하다는 등 신축적인 適用을 저해하게 됨에 따라 財源別 用途別 國庫支援比率을 단순화하여 事業執行의 效率性을 도모 키로 하였다.

	기	존	개	선
	(보조)	(용자)	(보조)	(용자)
○ 용지매수비	—	(70)	→ (20)	(25)
○ 부지시공시	(30)	—		
○ 진입도로, 용수	(70)	—		
○ 전력·통신	(100)	—	→ (85)	—
○ 조사설계감리	(100)	—		

④ 農工地區 弘報擴大

TV와 新聞에 대한 弘報를 強化하고 全國의 主要大都市 施策說明會를 開催하고 서울지역 移轉對象企業의 名單을 道및 市郡에 通報하여 적극 誘置토록 하는 동시에 地方行政研修院과 地方公務員教育院에 農工地區施策에 관한 教科目을 開設 運營하기로 하였다.

<'86, 2次 中央委員會 開催>—1986. 7. 28

道와 市郡의 적극적인 入住誘置努力에 의거 86年 7月 現在 21個所의 豫定地區中 16個所는 年內에 本地區指定이 可能할 것으로 豫想됨에 따라 政府에서는 農村工業化的 氣運이 繼속 북돋아 지도록 보완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次 委員會에서는 道別로 豫定地區의 지속적 確保, 후보지에 대한 道審查制度導入, 부대시설범위의 확대, 분양가격 결정방법등을 심의 확정하였다.

① 道別로 豫定地區의 지속적 유지

入住需要가 50%以上 확보되어 本地區로 指定되는 地域이 늘어남에 따라 道別로 3個의 範圍내에서 農工地區로 정식 指定되는 個所만큼 年中 수시로 豫定地區를 選定토록 함으로써 각 道別로 入住誘置 여건이 유리한 地域을 계속 선정토록 誘導하고, 入住需要確保에 대한 關心을 促進하며 中振公等에서 事業性 檢討등의 업무가 集中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豫定地區 候補地에 對한 道의 實查制度導入

市郡이 立地를 選定하면 中央에서 현지 出張하여 그 地域의 適合性 여부를 調査하여 왔으나 이 경우 단지 適合·不適合의 판단에 그치게 되어 당해 市郡에 더 좋은 地域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不適合 判斷時 새로운 立地選定過程에서 막대한 時間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選定된 후에도 位置를 變更하는 등의 事例까지도 發生하고 있었다. 따라서 市郡에서는 2~3個의 候補地를 추천하도록 하여 道와 市郡이 合同으로 實查를 하여 適地를 선정함으로서 시험착오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位置도 가급적 당해 市郡의 中心地나 高速道路 IC, 포장도로, 인접지역등 交通與件이 양호한 지역을 選定하도록 하였다.

③ 附帶施設 範圍의 擴大

附帶施設의 범위는 진입도로, 전력, 통신, 공업용수 개발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분양시 식당 등 共同利用施設用敷地를 사전에 確保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데 비하여 傾斜地와 地區內 道路등의 과다로 조성면적對比 분양면적이 과소한 실정에서 이를 入住者負擔으로 할 경우 過重한 負擔이 될 우려가 發生하였다. 따라서 地區內간

선도로, 간이 하수처리시설, 지구와 배수시설과 가로등 등은 附帶施設의 범위에 추가시키고 共同利用施設用 敷地는 入住企業 負擔으로 하되 傾斜面과 道路로 인한 流失分을 20% 以內로 하여 分양대상면적을 가급적 넓히도록 함으로써 入住者 負擔을 완화토록 하였다.

④ 分讓價格 決定

團地造成이 완료되면 分讓金額을 精算하여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入住需要가 많음을 이유로 分讓價格을 당초 개산가격금액보다 과다하게 引上하여 分讓精算하려고 함으로써 入住企業들로부터 不信을 야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分讓精算價格은 地區매입비와 地區조성비등 團地造成에 投入된 實際費用으로 하되 개산가격의 110%를 초과할 수가 없게 하였다. 그러나 國費補助를 제외한 造成原價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金額으로 하도록 하였다.

⑤ 農工地區 支援豫算 不足에 대한 對應方案 모색

景氣호전과 特別隨時指定制度의 新設등에 依한 入住需要增大로 財政의 추가支援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支援豫算은 一般會計(국비보조)나 資特會計(국비용·자) 모두가 확정상태이므로 支援財源이 不足할 것이 展望되었다. 따라서 特別隨時指定 農工地區는 市郡이 起債하여 추진하되, 87豫算에 反映하여 支援하고 豫定地區는 入住需要가 確保된 地域부터 支援하되 不足분은 豫備費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起債事業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⑥ 地方費 負擔 起債에 대한 규제 완화

農工地區 造成財源中 地方費負擔 起債가 1年 以內에 償還토록 되어 있어 分讓時 3년거치 5년 均分償還惠澤을 부여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財務

部에서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與信管理規程을 개정하여 長期起債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도록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⑦ 市郡의 工業行政人力 補強

市郡에 農工地區 등 農村工業化 施策推進 專擔人力이 全無한 실정인 바 특히 郡단위에는 大部分의 지역이 商工運輸係(또는 產業行政係)에서 工業業務를 추진하고 擔當要員이라고는 係長 1名과 係員1名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長期對策으로는 市郡단위에 地域經濟課를 新設하되 우선 當面對策으로 專擔要員 2名을 기동배치도록 조치하였다.

3) 1987년

<'87 1次 中央委員會 開催>—1987. 1. 27.

87년도는 農工地區 開發施策의 추진과정상 대단히 의미가 깊은 해라고 할 수 있다. 84년도부터 農工地區 開發事業을 시작하여 오는 동안 農漁村 工業化는 당초의 기대를 뛰어 넘을 정도로 입주수요 확보, 부지조성 공사 등 모든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전국적으로 농어촌 공업화와 新規創業의 boom을 유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農村工業化 boom을 더욱 加速化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였는 바, 工業與件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追加支援 擴大措置는 제2의 기폭제라고 말할 수 있었다.

① 工業與件이 不利한 地域에 대한 追加支援 擴大

경기도를 제외한 全 郡地域과 인구 20万이하의 市地域을 대상으로 農工地區 開發을 推進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내에서도 공업화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공업개발상 불균형이 초래됨으로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불리한 지역

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追加支援 對象地域은 다음과 같은 지역을 제외한 農漁村 地域으로 하였다. ⑦ 수도권과 직할시 및 대도시 인접 시군은 제외 ① 대전 이북권 역은 일부 교통여건이 불리한 지역외에는 가급적 제외 ② 기타 지역도 교통여건 등이 유리하여 공업유치 여건이 좋은 지역은 제외 ③ 공업집적도가 높은 지역 (제조업중업원/ 전체인구 = 0.08이상)은 제외 ④ 1백만평이상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는 지역은 제외

뿐만 아니라 農漁村 地域의範圍가 인구 20만 이하의 市로 制限되어 있으나 인구 20万 이상의 市中에도 工業與件이 不利하여 개발이 안된 지역이 있어 많은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므로 인구 20만이상 30만이하의 市中에서도 공업여건이 불리하고 개발이 안된 지역은 당해 지역의 공업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農漁村 地域으로 追加 告示키로 하였다. 이 때 추가된 지역은 목

포시와 송정시인 바, 목포시는 인구 23만이나 공업집적도가 0.03으로 농어촌 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인구 20만 이상의 都市地域(1特別市 4直轄市 18市)中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0.0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인근지역인 신안군 진도군이 도서 낙후지역으로서 工業誘致가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농어업만으로는 안정된 소득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사실상 生活圈 中心地인 목포시를 농어촌 지역에 포함시켜 인근지역의 工業化 據點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송정시는 1988년 1월1일자로 광주직할시및 송정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市로 昇格됨에따라 추가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공업여건의 불리로 인하여 追加支援을 받게 되는 對象地域은 19市 90郡으로 確定되었다. 그리고 1987년 1월부터 지정공고되는 農工地區부터 적용되는 지원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추가지원 내용

① 농공지구 입주중소기업 금융지원 한도액 확대

	일반농어촌 지역	추가지원대상지역	지원조건(동일)
○ 시설자금 :	3억원 이내 (소요의 90%까지)	5억원 이내 (소요의 90%까지)	년리 9% 3년거치
○ 운전자금 :	1억원 이내 (소요의 70%까지)	2억원 이내 (소요의 70%까지)	5년균분 상환
			년리 9% 1년거치

② 농공지구 조성비 지원 확대

○ 일반지정 농공지구

합계	일반농어촌 지역						추가지원 대상지역						(%)	
	국비· 보조		지방비· 융자		국비· 보조		지방비· 융자		국비· 보조		지방비·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용지취득 및 부지조성 (분양가 포함)	100	20	25	-	55	20	50	-	30	-	15	-		
진입도로등 부대시설 (분양가 제외)	100	85	-	15	-	85	-	15	-	15	-	-		

○ 特別지정 농공지구 (중소기업 입주지구에 국한)

	합계	일반 농어촌 지역				추가지원 대상지역				(%)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용지취득 및 부지조성 (분양가 포함)	100	-	45	-	55	-	70	-	30		
진입도로등 부대시설 (분양가 제외)	100	85	-	15	-	85	-	15	-		

* 대기업 입주지구는 기채시행 또는 입주기업 부담으로 조성

② 農工地區 入住企業 生產製品의 販路支援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生產品의 販路擴大가 시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委員會에서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가 가능토록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을 개정하여 農工地區 入住業體 生產品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모색하였다.

<'87 2次 中央委員會 開催> - 1987. 5.29

추가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重點支援하게 되자 特別農工地區에 대해서도 이를 調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확산되는 농어촌 공업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行政節次 簡素化와 필요한人力을 적정하게 공급하여야 하는 문제 가 제기 되었다.

① 追加支援對象 地域의 特別農工地區에 대한 支援強化

낙후된 추가지원 대상지역으로 많은企業들이 農工地區 入住를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로 추가 지원대상 지역은 도로, 용수등 공업화여건및 환경이 일반 농어촌지역에 비해 크게 불리한 실정으로 中小企業은 入住할 만한 與件이 크게 뒤떨어 지고 있었다. 따라서 개발이 낙후된 추가 지원대상 지역에는 가급적 大企業도 入住 誘致시켜 안정적인 農外就業機會 제공과 지역발전을先導케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식됨에 따라 추

가지원 대상 농어촌 지역의 特別農工地區에 大企業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대시설비는 中小企業의 경우와 동일하게 國費補助 85%, 地方費補助 15%의 比率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政府支援을 받는 이러한 경우는 일반 농공지구와 같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설계를 하도록 하였다.

② 農工地區開發 延面積 規制의 一部緩和

농어촌 공업화의 全國的인 擴散을 위하여 市는 20万坪, 郡은 10万坪으로 개발 연면적을 제한키로 1986년 4月23日 「86 1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농어촌 공업화의 보다 빠른 확산 및 편중 방지를 위하여 市郡모두 10万坪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운용하고 있던 중 일부 道로 부터 농공지구 개발 延面積을 철폐하거나 上向調整 또는 지역여건등을 감안, 신축적인 운용을 하여 달라는 建議가 많았고, 一部企業은 소요 부지의 규모가 커, 입주 경합이 적은 추가 지원대상지역으로 入住를 希望하는 데도 당해 市郡의 開發 延面積이 제한되어 있어 入住가 곤란한 事例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농공지구의 조속한 전국 확산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에의 入住企業 편중방지가 최우선이라는 大前提下에서 市郡當 開發 延面積은 계속 制限運用하되 다만 추가지원 대상 농어촌지역 (19市 90郡)에 대해서는 向後 人口등 유휴인력 규모와 入住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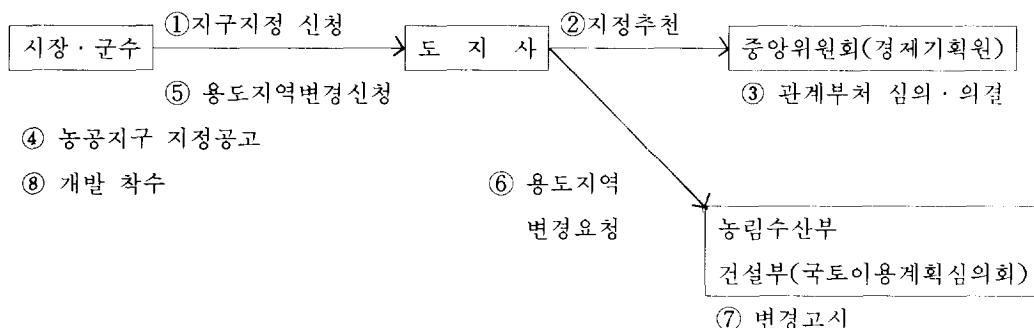
場의 特性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20万坪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3) 農工地區開發 節次의 簡素化

농공지구 입주수요의 好調로 농공지구개발의 신속성이 요청되고 있으나 지정후 개발까지 長期間이 소요되고 특히 一般農工地區의 경우 예정지구로 選定된 후 환경 및 사업성 평가결과 적합 기업의 입주수요가 50% 이상되어야 定式指定申請과 同時に 開發토록 함으로써 入住申請을 먼저한 기업의 경우에는 1년이상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個別企業에 대한 환경(환경청)과 사업성 검토(주로 中振公)기간의 과다 등도 문제가 되었지만 특히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 국토이용 관리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등 법령

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절차지연이 가장 큰 애로였다.

이에 대하여는 농공지구 지정후 建設部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던 것을 경제기획원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접 변경 요청하면 건설부에서 변경고시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농공지구 지정심의 요청시 지정계획서 외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심의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豫定地區는 환경 및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企業이 50%를 초과해야 本地區指定申請을 하던것을 向後에는 환경검토 결과 적합판정 기업이 50%를 초과하면 本地區指定申請을 함과 동시에 개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절차지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였다.



(4) 金融支援 窓口擴大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중진공과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동어촌 공업 지원자금」 취급기관을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본지점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근 도시까지 출장을 하여야 하는 등 입주기업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됨에 따라 農協과 7개 地方銀行을追加하여 10개 金融機關으로 확장하고 管理手數料를 明定하였다.

사업성검토 기관 금융 기관

○ 관리수수료 : 2%(적립)	1.5%(대손책임)
○ 기 능 : 사업성 검토	채권 확보
	자금배정
	용·자실행 등
	(기성고검사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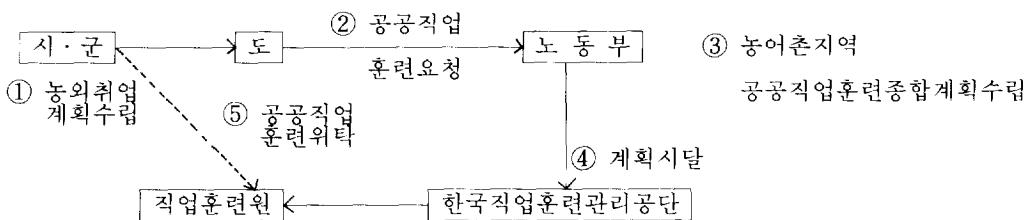
(5) 農外就業擴大를 위한 職業訓練實施

1987년 4월말 현재 38개 市郡에 46개 지구가

完工되어 358개 工場이 본격稼動될 경우 예상되는 總雇傭人力은 67千名이나 되어 이에 따른 「就業人力需給計劃」이 요망되었다. 또한 농공지구개발 및 화산추세로 보아 87년 말까지 60개이상 지정되고 6次計劃이 끝나는 91년 말까지 250개소 이상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비추어 일부 지역에서는 救人難問題도 우려되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유휴인력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公共職業訓練을 實施하여 農外就業機會가 擴大되도록 하여야 할必要성이 커졌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 위원회에서는 各道別 기능 훈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道산하에 있는 農民教育院을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으로 移管시켜 公共職業訓練體系를 一元化시키고 農工地區開發市郡부터 당해 市長·郡守의 要請이 있는 경우 公共職業訓練을 實施토록 하였다.

또한 1988년 부터 農工地區에 入住하는 中小

企業의 공동직업훈련체제(사업내훈련)를 적극擴散시키기로 하고 노동부의 직업훈련 촉진기금에서 공동훈련을 위한 施設裝備投資에 融資(年6%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하는 동시에 아울러 특수및 첨단 직종훈련 실시의 경우에도 기금에서 職業訓練補助金을 支給토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農工地區指定市郡별로 직종별 훈련수준별 人力需要를 조사하여 人力供給計劃을 수립하고 농공지구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道 및 市郡別 就業 직종별로 前年度末까지 노동부에 공공직업훈련을 위탁하고 시군과 읍면동별로 취업을 알선하는 취업안내 창구를 개설하며 농공지구 就業人力의 就業訓練을 위하여 지역내 學校의 施設을 利用할必要성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學校長과 협조하여 放學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訓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農工地區 地方費調達 起債에 대한 規制緩和

농공지구 조성재원중 지방비 부담 起債가 1年以內에 상환토록 되어 있어 부지 분양가의 분할상환(3년거치 5년균분) 혜택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실정으로 '86 2次 中央委員會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였던 바, 지방자치단체 부담 기채에 대하여 國費融資財源과 동일한 債還期間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1987년 7월 5일 부

터 시행하기 위해改正한「地方自治團體與信管理規定」은 농공지구 조성을 위하여 起債를 하는 경우 借入期間을 最長 8年으로 하여 분할상환시의 기간과 일치시켰다. 그리고 市郡에서 농공지구 본지구 지정후 團地設計에 의한 道의 사업계획 承認後에 처리하던 起債承認申請을 중앙위원회에서豫定地區로選定하게 되면 즉시 道를 經由하여 내무부에 起債承認申請을 하도록措置하였는 바(88. 1.14부터 시행) 이는 농공지구

개발 사업비의 조기 확보로 신속하게 사업을推進하고 節次를 簡素化함으로서 事業推進期間을 단축하는效果를 위한 것이었다.

〈'87 3次 中央委員會開催〉—1987. 9. 23.

① 農漁村 職業訓練 強化 및 就業指導事業

농공지구 입주공장의 기능공에 대한 救人難打開를 위하여 직업훈련을 강화하고자 '87 2次會議時 결정된 바 있는 직업훈련계획과 인력수급계획 기능을 강화하고 88년도부터 농공지구 별로 공동직업 훈련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동훈련을 위한 施設裝備 投資費用을長期低利融資하게 됨에 따라 이를 널리 弘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생의 都市集中을 억제하고 在村就業을 통한 產學연계를 적극지원 위하여 88년도부터 道教育監은 당해 道知事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공지구개발 인근고교에附設 特別學校를 新設 運營키로 하였으며 市郡은 入住企業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附帶施設로서 支援되는 共同利用施設에 공동탁아소를 개설 運用토록 하여 젊은婦女人力의 就業을 적극 지원토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88년도부터 설치운영되는 各道別 “產學協同教

育協議會”를 通하여 工業高校의 定員을 擴大도록 하고 아울러 工科 設置도 당해 지역설정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문교부 주관으로 농어촌 지역의 非工業系高校를 단계적으로 工業系高校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② 農工地區開發 所要財源 調達節次의 簡素化 농공지구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88년부터는 各道知事 責任下에 所要財源 調達은 先一括起債施行 後 精算交付申請方法을 原則으로 하였는 바, 이는 농공지구가 입주수요가 확보되는 대로 年中 수시로 指定開發되므로 시장군수는 일부 예산성립전 행위가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 경우 개발을 연기해야 하는 등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特別措置로서 장구된 것이다.

③ 農工地區敷地造成에 대한 國費補助 融資支援 内容의 變更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改正됨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중앙위원회에서 지정식의 되는 농공지구의 부지 조성비 지원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다.

			現 行		* '88 以 後	
			用地取得 및 數地施工	附帶施設 등	用地取得 및 數地施工	附帶施設 등
一般農漁村 (13市 30郡)	일반지정	合計	100	100	100	100
		國費補助	20	85	22.5	70
		國費融資	25	—	25	—
		地方費補助	—	15	—	30
	특별지정	地方費融資	55	—	52.5	—
1) 특별지정	合計	100	100	100	100	100
	國費補助	—	85	—	—	70
	國費融資	45	—	45	—	—
	地方費補助	—	15	—	—	30
	地方費融資	55	—	55	—	—

追加支援農漁村 (19市 90郡 2)	合計	100	100	100	100
	國費補助	20	85	37.5	70
	國費融資+基金	$25 + 25 = 50$	-	25	-
	地方費補助	-	15	-	30
	地方費融資	30	-	37.5	-
	合計	100	100	100	100
一般指定	國費補助	-	85	-	70
特別指定	國費融資+基金	$45 + 25 = 70$	-	70	-
	地方費補助	-	15	-	30
	地方費融資	30	-	30	-

- 1) 大企業入住地區는 地方起債事業 施行임.
 2) 大企業入住地區는 附帶施設등만 支援適用됨.

④ 農工地區內 共同利用施設의 支援基準과 그內容 確定

공동이용 시설의 부지는 분양대상 면적 1만평당 250평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分讓對象 面積이 5만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入住企業, 勤勞者, 規模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적정하게 결정하고 공동이용 시설 부지는 用地取得 및 地區施工費에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공동이용시설은 휴게실, 식당, 강당, 타아소, 도서실 금융취급소, 관리실등과 운동장, 주차장등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입주기업과 협의 결정토록 하였다.

⑤ 入住企業에 대한 金融支援內容의 變更

추가지원대상 농어촌지역의 입주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의 金利負擔을 1987년 10월1일자로 年利 8.5%로 全面引下(일반지역은 계속 年9%)하고 1987년 9월30일 이전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할 조건으로 農工地區에 入住한 中小企業中 농어촌 공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가 事業性檢討를 신청하는 경우 事業性檢討機關의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얻으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다.

⑥ 環境保全 指針整備

농공지구개발과 관련하여 放流管 매설 등은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시행하되 도지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농공지구 주변의 樹林帶造成 등 자연생태계 보전은 農工地區開發時に 우선 自然景觀을 保存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費用負擔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中長期推進課題로 하여 入住企業의 協調를 얻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4) 1988년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점차 그 需要가 많아지고 入住企業의 經營이 活性化되어 감에 따라 환경문제, 인력공급 문제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1988년 7월1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다.

① 農漁村地域의 環境污染防止

농공지구의 汚廢水排出 水質基準이 회입적으로 규제되어 있고同一한 農漁村 地域內에서도 中小企業 創業工場과 도시계획상 工業地域(邑面)은 BOD 50~300ppm인데 비하여 農工地區는 BOD 30ppm 이하로 되어 있어 均衡을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環境保全法令上 「清淨地域」이 BOD 50ppm이하 임을 감안할 때 농공지구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提起됨에 따라 농공지구는 BOD 30ppm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水系別 環境基準과 주변 水域의 여건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청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水質環境污染防止를 위하여 농공지구에 공동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설치하는 농공지구의 入住工場은 환경보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個別 防止施設의 設置는 免除키로 하였다. 공동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부담은 환경보전법령상의 일반원칙인 原因者 負擔原則에 따라 入住者가 負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政府 補助支援으로 造成開發되는 농공지구에 한하여 設置費의 70%는 政府가 補助하고 30%는 基金에서 融資토록 하였다.

② 農漁村의 貨加工 所得增大 支援

농공지구 입주공장들이 本格稼動함에 따라 제품 생산과정 중 단순 가공을 주변 농어가에 下請을 주면 入住工場은 生產費 節減등을 기하면서 농어가는 부녀자, 노령인력등 유후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農外所得을 크게 增大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大都市 所在 工場의 경우에도 노사분규와 인력확보난 등으로 貨加工下請需要가 많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농어가와 연계시킬 경우 그 成果는 매우 클것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가 主體가 되어 농어가 부업소득확충을 위한 支援體制를 마련하여 임가공 하청공장과 單協과를 연계시키도록 하고 아울러 농공지구 입주 가동공장으로서 임가공 하청수요가 있는 경우 농어가에 대여하는 資本設備費를 5천만원 限度(所要의 100%)에서 웅자지원키로 하였다.

③ 農漁村 職業訓練 強化

농공지구 입주공장의 가동이 활발해지는데 비하여 각도별 農村職業訓練院등의 公共職業訓練

만으로는 技能人力 需要에 充當하기 곤란하고 공공직업훈련시설이 都市에 偏在되어 있어 농어민은 생활불편 등으로 入所를 기피하는 事例도 發生되었다. 따라서 농공지구에는 제조공장만 入住토록 되어 있던 것을 고쳐 技術및 技能訓練을 위해 認定職業訓練院이 농공지구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入住後 1년이내에 노동부의 認可를 받을 것을 條件으로 入住許容토록 하였다.

④ 農工地區 周邊 生活環境 造成및 整備支援

농공지구 指定前에는 농업생활 환경이었던 것이 농공지구가 조성됨으로서 근린 생활환경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토이용관리법령상의 規制로 生活圈을 새로이 造成·整備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例컨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4(취락지역의 입안)에 의하면 농지가 무조건 全體面積의 20%以下가 되도록 규제함으로서 사실상 用途地域 變更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농공지구 주변지역에 생활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대상 농지의 編入問題는 집단화된 우량농경지는 保全하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감히 解除하여 支援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⑤ 農工地區 周邊 道路網 整備

농공지구 입주공장의 稼動이 本格化함에 따라 原·副資材 調達및 生산제품의 輸送등이 원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공지구는 주변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아 入住工場稼動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國道·地方道 및 郡道는 가급적 '89年예산에 시급한 지역을 우선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고 아울러 市道와 農路는 농어촌소득원 도로로서 계속 지원토록 하였다.

⑥ 農工地區 入住工場의 增設許容을 위한 制限緩和

농공지구에 입주후 기업여건의 변화로 공장확장이 불가피한데다 生產 및 製造工程으로 보아 지구주변에 공장입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는 農外就業機會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크게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일부 농공지구의 추가개발을 선별 허용하되 확장 개발비는 전액 입주자 부담으로 추가 개발하여 분양토록 하였다.

⑦ 一般農工地區의 本地區指定權을 道에 委任 일반농공지구의 경우 예정지구선정시 중앙위원회에서 입주수요를 제외하고는 공장입지로서의 여부는 충분히 심의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농공지구개발에 대한 自律 推進能力을 제고시키고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예정지구에 대한 正式 本地區指定權限을 道에 委任키로 하였다. 다만 農工地區의 位置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⑧ 金融機關 窓口擴大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施設 및 運轉資金의 금융취급기관을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7개 지방은행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全 金融機關으로 擴大 허용키로 하였다.

IV. 農工地區 開發의 成果와 波及効果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지난 84년 12월17일 최초로 7개소의 農工地區를 지정한 이래 현재는 102

○ 入住形態別 分布

합 계	이 전	분 공 장	창 업
1,034개 (100.0)	509개 (49.2)	177개 (17.1)	348개 (33.7)

개소를 지정하였고, 그중 38개소는 부지조성 완료후 가동중이며 부지조성 중 이 36개소, 부지조성 준비가 28개소이다. 많은 地區가 부지조성 進度에 따라 동시에 工場建築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조성후에 건축을 시작함으로서 현재 가동중인 공장은 계획 1,034개중 13.9%인 144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취업 및 인구정착효과, 소득유발효과, 타산업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의 기여효과, 지역개발효과 등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라고 인정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약간 시기 상조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 1984년 農工地區 施策이 推進되어 온 이래 계속 가장 큰 問題點으로 제기되어 왔던 입주수요 확보측면에서 본다면 農工地區는 현재의 時點만에서도 평장한 成果를 거두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아래표에서 보듯이 50%가 確保되어야 本地區指定을 하는 절차를 감안할 때 그동안 市·郡이나 관계부처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계속적으로 入住需要를 確保함으로써 86년에는 24개소 704천평, 87년도에는 46개소 2,145천평, 88년도에는 현재까지 25개소 1,014천평을 지정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大都市工場의 地方移轉이 49.2%를 차지하고 있으나 新規創業企業도 33.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공지구 시책은 우선 그 막대한 開發面積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國民經濟에 新規創業에 대한 立地供給을 확대하였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年度別 農工地區 現況

	합 계	'84	'86	'87	'88.6.
○지구수(개소)	102	7	24	46	25
－일반지정	52	7	16	19	10
－특별지정	50	—	8	27	15
○연면적(천평)	4,045	182	704	2,145	1,014
○입주공장(개)	1,034	78	217	452	287
○시·군수(개)	70	7	21	27	5

V. 農工地區 開發 施策의 發展方向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政府에서는 農工地區를 앞으로의 農漁村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第1의 基本 政策手段으로 간주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993년까지 350개소를 開發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研究 檢討하여야 할 事項이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開發經驗과 그동안 나타난 問題點을 分析하여 앞으로의 發展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農工地區의 均衡的 開發誘導

落後地域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追加支援對象地域을 다시 더 細分化하여 새로이 高速道路가 통과하는 地域등은 除外시키고 殘餘地域은 더 많은 支援을 하는 등 지역별 工業化 與件에 따른 差等 支援을 強化함으로서 지역간 均衡的 開發을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落後, 輿地地域에는 下部構造 등이 더욱 미비하여 現行支援體制로는 入住需要를 確保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地域開發과의 連繫化

1) 下部構造 및 生活便益 施設의 擴充

農工地區를 中心으로 새로운 定住生活圈의 장기적인 開發이 可能토록 인근 농촌중심지와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며 위락·편익시설의 擴充計

劃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道路의 鋪裝을 擴充하여 生產基盤關聯 下部構造를 改善하여야 한다.

2) 地域資源의 活用

地域特產物을 최대한으로 活用하는 製造業을 育成하도록 하며, 農產物 集產化를 中心으로 農產物 加工工場을 適地에 配置하도록 한다.

3) 關聯產業과의 連繫化

大企業의 生산계열화와 인근 工業團地와의 連繫化도 推進하여 農공지구 입주기업의 健全한 育成을 꾀하도록 하며 地方建設業體 입찰경쟁한도액의 上向調整으로 農工地區造成工事에 地方企業이 우선적으로 激注하도록 하여 地方企業과 地域經濟의 活性化를 도모한다.

다. 技能人力의 育成과 就業人口의 擴大

地域內 고등학교에 機能技術 實習資材를 擴充하여 지역기술훈련센타로 育成 短期技術教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어촌지역의 產業構造와 직결되는 기술전문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설립을 통하여 기술교육 기회를 확장한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非工業系 高校에도 공업계를 설치하여 地域에 必要한 人材를 배출하며 지역별로 年間 기능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地域內의 需給機能을 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產學協力體制의 確立을 通하여 農공지구별로 共同職業訓練을

實施하고 훈련비용에 대한 政府의 財政支援도 強化하도록 한다. 그리고 地方行政 一線組織(市郡·邑面)을 商工行政 위주의 組織으로 그 機能을 強化함과 同時에 就業 알선 窓口를 운영하여 地域勞動力의 調査 및 長期 就業對象을 체계적으로 취업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行政·制度的 支援強化

현재 國土의 合理的 開發과 利用을 위하여 中央政府에서 운용하고 있는 國토이용관리법상의 각종 用途地域 變更承認權과 農地轉用 許可權을 점차 道知事에게 이양하여 제도적 절차의 간소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中小企業資金 貸出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자금의 배당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하고 新規 創業企業에 대해 技術의 事業性을 근거로 貸出保證을 할 수 있는 별도의 信用保證 機關을 설립하여 창업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地方金融의 活性化를 위하여 地方銀行과 農協의 機能을 擴大하고 신용대출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 農業構造 改善事業의 強力推進

工場에서 就業하는 農漁村의 人力이 증가함에 따라 不足한 일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營農機械化와 農業構造 改善事業을 지속적으로 推進하여야 한다.

바. 自然環境 保全

農耕地 편입허용 기준의 明細化를 통하여 地域別 綜合的 上地利用計劃을 수립하여 工場建設에 農地編入을 가급적 抑制하도록 한다. 뿐만아

니라 환경에 대한 관심은 급속히 增大될 것이므로 新設되는 農공지구는 環境污染 防止施設을 처음부터 設置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 地域住民과의 紐帶強化

地域住民과 유리되고 지역주민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企業은 經營活動에 많은 隘路가 예상된다. 따라서 地域雇傭의 擴大, 共同參與行事의 開催 등을 통하여 地域住民과 밀착된 企業環境이 造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II. 맷는 말

지금까지 農工地區 施策의 推進背景, 운영실태와 政策의 改善過程, 發展方向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하나의 政策이 계획적으로 多年間에 걸쳐 推進되는 경우 그 經濟的인 効果는 상당한 時日이 지난 後에 파악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政策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執行過程에서 얼마 만큼 努力を 하였는가 하는 점이라고 본다.

本研究는 「結果보다는 過程을」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4년간의 政策過程을 政策分析的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政策改善過程은 앞으로도 持續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農工地區가 현재와 같이 成功的으로 入住需要가 確保되면 그 經濟的인 波及效果도 머지않은 장래에 커다랗게 되어 당초 意圖한 地域均衡 開發도 빠른 速度로 實現되리라고 생각된다.